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단267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주대경, 박재현, 한상균, 김충기, 김해린, 서경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 서자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박정근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1. 12. 접수 제4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C에게 화물차량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C이 이를 상환하지 않자, C을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7. 21. ‘C은 원고에게 45,680,4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2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2017. 9. 30. 피고와 위 공유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C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243,500,000원은 피고가 마련한 종전 아파트의 매도대금 93,000,000원과 피고가 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합하여 구입한 것이고, 위 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는 정육점을 운영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반면 C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와 C가 2017. 9. 19.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2018. 3. 27.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그 신고를 마쳤고, 피고가 2017. 10.부터 C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200만 원씩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84.989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 23370.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3370.5분의 51.23

- 끝 -

